

제343회 임시회
2015. 10. 13.(화)

전문위원 검토보고서

충북도립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정책복지위원회
수석전문위원

충북도립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 : 2015년 10월 2일
- 회부일자 : 2015년 10월 5일

3. 제안이유

- 도민에게 불편 부담되는 자치법규 내 불합리한 등록규제 일괄정비 계획에 따라 규제를 정비 하고자 함
- 「행정규제기본법」에 따라 일부 모호하거나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조례 내 위탁운영 취소사유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표현하고 정비함으로써 동 조례의 규제 내용의 객관성·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- 충북도립노인전문병원의 위탁의 취소에 관한 사항 개정(안 제11조)

5. 검토의견

- 동 조례안은 「행정규제 기본법」 제4조(규제 법정주의)에 따라 규제의 명확성을 기하고자, 모호하고 추상적인 규정을 삭제, 수정 등 개정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.
- 동 조례안의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,
 - 기존 조례 제11조에 명시된 위탁의 취소 사유 중 제1호 '수탁자가

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 될 경우' 는 규제법정주의원칙에 부합되지 않는 기준 자체가 모호한 규정으로 이를 '수탁자가 파산, 법인정리절차 개시 신청 등의 사유로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'로 수정하고,

-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25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·수익허가 취소 사유인 '거짓 진술,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, 그 밖의 부정확한 방법으로 위탁받은 경우'를 추가한 것으로, 법리적, 내용적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사료됨.

< 참고자료 >

□ 충북도립노인전문병원 위탁 현황

- 수탁기간 : 2013. 2. 12 ~ 2016. 2. 11(3년간)
- 수탁기관 : (의)참사랑재단(이사장 : 최정봉)
- 위 치 :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 1910(미평동)
- 규 모 : 건물 3,540㎡(지하2층, 지상5층), 149병상
- 위 탁 비 : 없음
- 위탁사무
 - 치매환자 외래 및 입원진료·요양
 - 치매환자 임상 및 역학조사 연구
 - 기타 노인·치매환자의 진료와 요양에 관한 사항